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 및 직원의 지위 규정 신설〉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8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6.
3. 회부연월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복무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개정안은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토록 하고,¹⁾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①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함(안 제8조의2제2항).

□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국방부 또는 방사청 소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는 전쟁기념사업회 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각각 「국방과학연구소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임원 및 직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기념사업회법」에는 임원 및 직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 입법례]

구 분	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제3호(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방산물자수출등)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방과학연구소법」 또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경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은 예외 적용)과 직무관련 책임에 적용되는 「형법」상 규정들을 다음과 같음.

[임·직원의 지위 관련 준용 규정]

구 분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방과학연구소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준용/ 개정안에 미준용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 「국방과학연구소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준용/ 개정안에 준용/ 국방부 의견은 미준용 제67조 (위임 규정)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미규정/ 개정안에 규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 이와 같이 국방부 소관 다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에 대한 복무기준 및 직무관련 책임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과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 적용 조문들을 명시적으로 준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책임 제고와 복무기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쟁기념사업회의 일부 직원들이 참여한 노조가 이미 결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 행위의 금지를 준용할지 여부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법적 성격 및 해당 직원들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직무 수행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국방부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노조활동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구성 및 노조가입 현황

□ 사업회 임직원 구성(상근)

(단위: 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별정직	일반 정규직 (호봉, 승진제)	공무직(계약직)			
						계	연구직 (학예, 전시, 교육 등)	일반직 (행정, 경리 등)	기능직 (미화, 경비 등)
합계	정 원	233	1 (회장)	1 (사무총장)	75	156	40	40	76
	현 원	224	1	1	75	147	38	40	69

* 임원(명) : 회장(상근 1), 부회장(비상근 3), 기타 이사(비상근 5), 감사(비상근 1)

* 정원 외 임금피크제 인원 4명 별도(재정경제부 승인)

□노조가입 현황 : 공무직 중 16명(주로 미화, 조경) 가입(민주노총) 中

(사업회 회장 - 노조위원장간 단체협약서 체결)